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시 정 요 구

제 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관리·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내 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 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아산시 ○○○○과는 2014년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 당시에 일반회계로 편성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국고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설치부담금을 우선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보조금 정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회계관리 부적정 처분을 받았다.

그 이후 위 관서는 2014년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 후속조치로 2015. 6. 5.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개정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회계 관리 부적정

아산시 ○○○○과는 2014년 10월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393백만 원을 수납하였다.

[표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현황

| 택지개발사업명 | 납부일자     | 납부금액<br>(백만원) | 세출예산 현황    | 감사 시<br>지적사항                                        |
|---------|----------|---------------|------------|-----------------------------------------------------|
| ○○○○지구  | 2015.7.3 | 933           | 2016년 특별회계 | ○○○○지구<br>폐기물처리시설<br>설치부담금을<br>특별회계가 아닌<br>일반회계로 관리 |
| ○○○○지구  | 2015.7.3 | 2,460         | 일반회계       |                                                     |
| 계       |          | 3,393         |            |                                                     |

※ 아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아산시 ○○○○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계정(특별회계)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015. 6. 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징수계획’을 내부보고를 통하여 결재(시장결재)를 득하였다.

아산시 ○○○○담당관(구 ○○○○담당관)은 ○○○○과에서 수립한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징수계획에 대하여 2015년 세입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연차적으로 특별회계에 분할편성하기로 협조부서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일부인 ‘○○○○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933백만 원)’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고, ‘○○○○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2,460백만 원)’은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았다.

금번 정부합동감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운영실태 감사 시 아산시의 2016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아산시 ○○○○담당관은 ○○○○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460백만 원을 연차적으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기로 한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아산시의 2017년 예산편성 시에도 아산시 ○○○○과에서 ○○○○담당관실에 ○○○○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2,460백만 원)을 2017년 세출예산에 특별회계로 편성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담당관은 여전히 ‘○○○○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2,460백만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았다.

결국 아산시 ○○○○담당관은 2015년도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2,460백만 원)을 특별회계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위법·부당하게 관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폐기물처리시설 택지부담금 집행 관리 부적정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폐

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아산시 ○○○○과는 2015. 6. 5.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sup>1)</sup>제4항에 ‘그 밖의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특별회계의 세출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같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2016년과 2017년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아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유지보수(소각로 화격자 및 내화물 교체)비용’으로 442백만 원을 지출하였다.

[표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집행현황

<단위 : 원>

| 구분    | 집행내역                  | 수입액         | 지출액                | 잔액          | 감사 시<br>지적사항                 |
|-------|-----------------------|-------------|--------------------|-------------|------------------------------|
| 2015년 | ○○○○지구<br>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 932,585,000 | 0                  | 935,548,830 | 폐기물처리시설<br>설치부담금을<br>목적 외 사용 |
|       | 예금이자                  | 2,963,830   | 0                  | 935,548,830 |                              |
| 2016년 | 소각로 화격자 교체 등          |             | 350,856,260        | 584,692,570 |                              |
|       | 예금이자(6월, 12월)         | 3,763,770   |                    | 588,456,340 |                              |
| 2017년 | 소각로 내화물 보수 등          |             | 90,755,550         | 497,700,790 |                              |
|       | 예금이자(6월)              | 1,453,470   |                    | 499,154,260 |                              |
| 계     |                       | 940,766,070 | <b>441,611,810</b> | 499,154,260 |                              |

※ 아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아산시 ○○○○과에서 개정한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 “그 밖의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의 규정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2항 “받은 금액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1) 특별회계의 세출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sup>2)</sup>된다.

결국 위 관서에서는 상위법령 폐기물시설축진법에 위배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을 장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아산시 관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유지보수비로 442백만 원을 폐기물시설축진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아산시장은

[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는 절차에 따라 정비하고, 같은 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납부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460백만 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441백만 원을 회수하여 특별회계로 편입한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등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 대한 의미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참조)